

□ 변경 대비표

변경시행일 : 2019년 3월 22일

신한BNPP미국증권투자신탁(H)[주식]

집합투자계약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 1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2 A-u, A-u2 전환대상 펀드 삭제 및 명칭&전략변경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집합투자"라 함은 2인 이상의 투자자<신설>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집합투자"라 함은 2인 이상의 투자자 (또는 법 제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1.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15조 (자산운용지시 등)	제15조 (자산운용지시 등) ①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제15조 (자산운용지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현행과 같음>
1.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45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45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 <생략>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신설>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제45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 <현행과 같음>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1.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49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제49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이하 생략>	제49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83조제2항에서 정하는 때 <이하 현행과 같음>
1.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50조 (공시 및 보고서 등)	제50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①~⑥ <생략>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이하 생략>	제50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①~⑥ <현행과 같음>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전자우편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p>2. A-u, A-u2 전환대상 펀드 삭제 및 명칭&전략변경: 제2조 (용어의 정의)</p>	<p>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 <생략> 10. " 전환형" 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투자신탁 중 1)목 내지 18)목의 투자신탁의 종류 A-u 수익증권(통칭하여 "신한 BNPP 엠브렐러 클래스 펀드")간, 12)목 내지 20)목의 투자신탁의 종류 A-u2 수익증권(통칭하여 "신한 BNPP 엠브렐러 클래스II 펀드")간에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투자신탁을 말한다. 1) 신한BNPPBESTCHOICE단기증권투자신탁제4호[채권] 2)~8) <생략> 9) 신한BNPP유럽전환사채증권투자신탁제1호(H)[채권혼합-재간접형] 10)~20) <생략></p>	<p>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 <현행과 같음> 10." 전환형" 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투자신탁 중 1)목 내지 17)목의 투자신탁의 종류 A-u 수익증권(통칭하여 "신한 BNPP 엠브렐러 클래스 펀드")간, 13)목 내지 19)목의 투자신탁의 종류 A-u2 수익증권(통칭하여 "신한 BNPP 엠브렐러 클래스II 펀드")간에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투자신탁을 말한다. 1) 신한BNPP베스트단기증권투자신탁[채권] 2), 3), 5)~8) <현행과 같음> <삭제> 4), 9)~19) <현행과 같음></p>
<p>2. A-u, A-u2 전환대상 펀드 삭제 및 명칭&전략변경: 제51조의 2(투자신탁의 전환)</p>	<p>제51조의 2(투자신탁의 전환) ① 수익자는 " 신한 BNPP 엠브렐러 클래스 펀드" 를 구성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 내에서 하나의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고 그 환매대금으로 다른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을 매입(이하 " 전환" 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익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 집합 투자증권 중 종류 A-u 집합투자증권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생략> 2. 신한BNPPBESTCHOICE단기증권투자신탁제4호[채권] 3.~15. <생략> 16. 신한BNPP유럽전환사채증권투자신탁제1호(H)[채권혼합-재간접형] 17.~18 <생략> ② 수익자는 " 신한 BNPP 엠브렐러 클래스II 펀드" 를 구성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 내에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익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 집합투자증권 중 종류 A-u2 집합 투자증권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생략> 2. 신한BNPPTopsValue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3.~7. <생략> 8. 신한BNPP에너지&농산물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파생형] 9. <생략> ③ <생략></p>	<p>제51조의 2(투자신탁의 전환) ① 수익자는 " 신한 BNPP 엠브렐러 클래스 펀드" 를 구성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 내에서 하나의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고 그 환매대금으로 다른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을 매입(이하 " 전환" 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익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 집합 투자증권 중 종류 A-u 집합투자증권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신한BNPP베스트단기증권투자신탁[채권] 3.~15. <현행과 같음> <삭제> 17.~18 <현행과 같음> ② 수익자는 " 신한 BNPP 엠브렐러 클래스II 펀드" 를 구성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 내에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익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 집합투자증권 중 종류 A-u2 집합 투자증권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삭제> 2.~6. <현행과 같음> <삭제>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p>④ 수익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환처리 한다. 이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p> <p>1.~3. <생략></p> <p>4. 신한BNPPBESTCHOICE단기증권투자신탁제4호[채권] 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p> <p>5.~7. <생략></p> <p>8. 신한BNPP골드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신한BNPP동남아시아증권자투자신탁제1호(H)[주식], 신한BNPP브릭스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재간접형], 신한BNPP브릭스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 신한BNPP유럽전환사채증권투자신탁제1호(H)[채권혼합-재간접형], 신한BNPP친디한증권자투자신탁(H)[주식] 에서.. <이하 생략></p>	<p>④ 수익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환처리 한다. 이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p> <p>1.~3. <현행과 같음></p> <p>4. 신한BNPP베스트단기증권투자신탁[채권]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p> <p>4.~6. <현행과 같음></p> <p>8. 신한BNPP골드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신한BNPP동남아시아증권자투자신탁제1호(H)[주식], 신한BNPP브릭스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재간접형], 신한BNPP브릭스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 <삭제>, 신한BNPP친디한증권자투자신탁(H)[주식] 에서.. <이하 현행과 같음></p>
---	---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 1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 2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 3 최근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 4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5 A-u, A-u2 전환대상 펀드 삭제 및 명칭&전략변경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19년 2월 28일)
2.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최근현황갱신 (기준일: 2019년 2월 28일)
3. 최근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최근현황갱신 (기준일: 직전회계연도)
3. 최근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제3부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3부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3부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최근현황갱신 (기준일: 직전회계연도 및 2019년 2월 28일)
4.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신설>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p>4.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p>	<p>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이하 생략></p>	<p>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이하 현행과 같음></p>
<p>5. A-u, A-u2 전환대상 펀드 삭제 및 명칭&전략변경: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p>	<p>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전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전환형 구조로,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이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해 다음 각호의 종목간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환형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A-u : 신한 BNPP 엠브렐러 클래스 펀드 1. 신한BNPPBESTCHOICE단기증권투자신탁제4호[채권] 9. 신한BNPP유럽전환사채증권투자신탁제1호(H)[채권혼합-재간접형] 종류 A-u2 : 신한 BNPP 엠브렐러 클래스II 펀드 2. 신한BNPPTopsValue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8. 한BNPP에너지&농산물인덱스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파생형]</p> <p>◆ 전환대상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전환대상 집합투자기구명: 신한BNPPBESTCHOICE단기증권투자신탁제4호[채권] - 주요투자대상 및 전략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채, 통화안정증권, 우량 회사채 등의 채권에 주로 투자합니다. 잔여 투자신탁재산은 어음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여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 주요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채, 통화안정증권, 우량 회사채 등의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증권 등 가격변동위험 등이 존재 합니다.</p> <p>- 전환대상 집합투자기구명: 신한BNPP유럽전환사채증권투자신탁제1호(H)[채권혼합-재간접형]</p>	<p>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전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전환형 구조로,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이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해 다음 각호의 종목간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환형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A-u : 신한 BNPP 엠브렐러 클래스 펀드 1. 신한BNPP베스트단기증권투자신탁[채권] <삭제> 종류 A-u2 : 신한 BNPP 엠브렐러 클래스II 펀드 <삭제></p> <p>◆ 전환대상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전환대상 집합투자기구명: 신한BNPP베스트단기증권투자신탁[채권] - 주요투자대상 및 전략 : 이 투자신탁은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잔여 투자신탁재산은 양도성예금증서 등의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 주요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주로 신용등급이 비교적 낮은 A등급이나 BBB+등급의 채권, A2등급이나 A3 등급의 기업어음 등의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증권 등 가격변동위험 등이 존재 합니다. <삭제></p>
<p>5. A-u, A-u2 전환대상 펀드 삭제 및 명칭&전략변경: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p>	<p>제2부 11. 매입, 환매 및 전환 기준 마. 펀드 간 전환 (엠브렐러 클래스 펀드) (1) 전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과 같은 전환형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간의 전환과 관련하여 별도의 횡수 제한은 없으며, 전환 시 환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전환대상 투자신탁> - 종류 A-u : 신한 BNPP 엠브렐러 클래스 펀드 2. 신한BNPPBESTCHOICE단기증권투자신탁제4호[채권] 16. 신한BNPP유럽전환사채증권투자신탁제1호(H)[채권혼합-재간접형] - 종류 A-u2 : 신한 BNPP 엠브렐러 클래스II 펀드 2. 신한BNPPTopsValue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8. 한BNPP에너지&농산물인덱스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파생형]</p>	<p>제2부 11. 매입, 환매 및 전환 기준 마. 펀드 간 전환 (엠브렐러 클래스 펀드) (1) 전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과 같은 전환형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간의 전환과 관련하여 별도의 횡수 제한은 없으며, 전환 시 환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전환대상 투자신탁> - 종류 A-u : 신한 BNPP 엠브렐러 클래스 펀드 2. 신한BNPP베스트단기증권투자신탁[채권] <삭제> - 종류 A-u2 : 신한 BNPP 엠브렐러 클래스II 펀드 <삭제></p>

<p>3. A-U, A-U2 인력내용 드 삭제 및 명칭&전략변경: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전환 기준</p>	<p>(2) 전환 절차 및 방법 수익자가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처리 합니다. 이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p> <p>1) 신한BNPPBESTCHOICE단기증권투자신탁제4호[채권] 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p> <p>4) 신한BNPP골드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신한BNPP동남아시아증권자투자신탁제1호(H)[주식], 신한BNPP브릭스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재간접형], 신한BNPP브릭스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 신한BNPP유럽전환사채증권투자신탁제1호(H)[채권혼합-재간접형], 신한BNPP친디한증권자투자신탁(H)[주식] 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이하 생략></p>	<p>(2) 전환 절차 및 방법 수익자가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처리 합니다. 이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p> <p>5) 신한BNPP베스트단기증권투자신탁[채권] 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p> <p>3) 신한BNPP골드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신한BNPP동남아시아증권자투자신탁제1호(H)[주식], 신한BNPP브릭스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재간접형], 신한BNPP브릭스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 <삭제>신한BNPP친디한증권자투자신탁(H)[주식] 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이하 현행과 같음></p>
---	---	---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 1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 2 최근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갱신

항목	정정전	정정후
<p>1.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제2부 I. 3. 운용전문인력</p>	<p>제2부 I. 3. 운용전문인력</p>	<p>제2부 I. 3. 운용전문인력 - 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19년 2월 28일)</p>
<p>2. 최근 결산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갱신 : 제2부 I.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p>	<p>제2부 I.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p>	<p>제2부 I.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최근 현황 갱신</p>
<p>2. 최근 결산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갱신: 제1부 보수 및 수수료</p>	<p>제1부 보수 및 수수료</p>	<p>제1부 보수 및 수수료 - 최근 회계 연도 기준 갱신</p>